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 | |
|---|------|
| 선 | 기관국장 |
| 람 | |

제1771호 2023. 8. 14.(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0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_____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 _____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_____ 5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고시 제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_____ 8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고시 제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_____ 10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고시 제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_____ 12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_____ 14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140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사업】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476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8.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3-61번지 외 3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 명칭 : 원창동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변경 없음)

- 면적 : 353m²
- 규모 : L=42m, B=7.8m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주식회사 정원도시개발 대표이사 박정서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268(왕길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6. 30.
-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 ~ 2024.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소유권 외 권리 | |
| 계 | | | | 353 | 353 | - | - | | | | |
| 1 | 원창동 | 213-61 | 대 | 137 | 137 | 주식회사 **도시개발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왕길동) | | | | |
| 2 | 원창동 | 213-65 | 대 | 73 | 73 | 김*영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번길 **, *동 ***호(간석동, ****) | 중소 기업은행 |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 지상권 설정 | |
| 3 | 원창동 | 220-6 | 잡 | 91 | 91 | 주식회사 **도시개발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왕길동) | | | | |
| 4 | 원창동 | 220-8 | 잡 | 52 | 52 | 국 (기획재정부) | | | |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14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시일 : 2023. 8. 14.

2. 고시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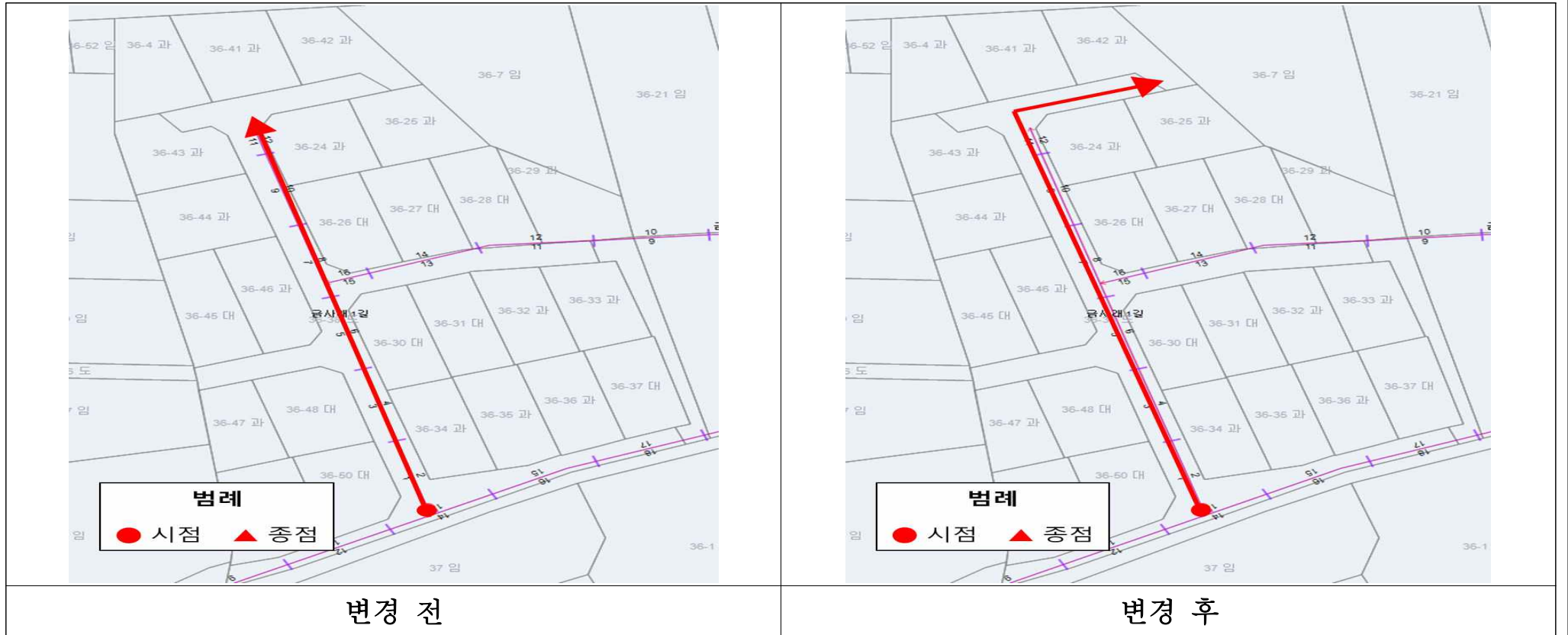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붙임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032-560-483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간 변경 조서

| 연번 | 내역 | 도로 유형 | 도로명 | 시 점 | | 종 점 | | 길이 (m) | 폭 (m) | 기초 간격 (m) | 기초번호 | | 관할 행정구역 | 도로구간 변경 고시일 (효력 발생일) | 도로구간의 변경 사유 |
|----|----|-------|-------|-----|-------|-----|-------|--------|-------|-----------|------|----|----------|----------------------|----------------------|
| | | | | 읍면동 | 지번 | 읍면동 | 지번 | | | | 시작 | 끝 | | | |
| 1 | 기존 | 길 | 금사래1길 | 대곡동 | 36-38 | 대곡동 | 36-38 | 107 | 6 | 20 | 1 | 12 | 인천광역시 서구 | 2023. 8. 14. | 도로구간 변경으로 인한 도로구간 연장 |
| | 변경 | | | 대곡동 | 36-38 | 대곡동 | 36-38 | 137 | 6 | 20 | 1 | 14 | | | |

○ 도로구간 변경 전 · 후 도면 (금사래1길)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14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16번길 13 외 28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사유 | 도 로 명 고 시 일 | 도 로 명 부 여 사 유 |
|------|-------|-------------------|----------------|------------------|
| | | 별 도 열 략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8.1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3-8-14

| 연번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1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146 |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16번길 13 (청라동) | 20180827 | 청서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160M 오른쪽으로 분기된 도로 | |
| 2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98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로 32-3 (오류동) | 20090922 | 오류동 내 오류역사를 경유하는 도로 | |
| 3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289 |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7-41 (백석동) | 20220221 | 인근의 자연부락인 거월을 지나는 도로임 | |
| 4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178 |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7-39 (백석동) | 20220221 | 인근의 자연부락인 거월을 지나는 도로임 | |
| 5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32-8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10번길 20 (검암동) | 20090922 | 검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3-8-14

| 연번 | 도로명주소 | 폐지사유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1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89번길 5-6 (석남동) | 건물 철거 | 20090922 |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2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89번길 5-4 (석남동) | 건물 철거 | 20090922 |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3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89번길 5-2 (석남동) | 건물 철거 | 20090922 |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4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256 (석남동) | 건물 철거 | 20090706 | 원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급신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현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 | |
| 5 | 인천광역시 서구 을도로36번길 10-1 (석남동) | 건물 철거 | 20090922 | 을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6 | 인천광역시 서구 을도로36번길 8 (석남동) | 건물 철거 | 20090922 | 을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7 | 인천광역시 서구 을도로36번길 8-5 (석남동) | 건물 철거 | 20090922 | 을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8 | 인천광역시 서구 간지로86번길 33 (가좌동) | 건물 철거 | 20090922 | 간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9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78번길 13 (가좌동) | 건물 철거 | 20090710 |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현대자동차 오일교환 전담소 |
| 10 | 인천광역시 서구 을도로50번길 10-8 (석남동) | 건물 철거 | 20090922 | 을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1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67번길 10 (가좌동) | 건물 철거 | 20090710 | 봉오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2 | 인천광역시 서구 열곡로295번길 14 (석남동) | 건물 철거 | 20090922 | 열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3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262번길 10-6 (석남동) | 제속 | 20210531 | 중봉대로 시작점의 2,620M 지점에서 분기하는 도로 | |
| 14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69번길 24-6 (오류동) | 검단출장소-26055 (2023. 8. 9.)호에 외기 말소 | 20081231 |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5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69번길 24-1 (오류동) | 검단출장소-26059 (2023. 8. 9.)호에 외기 말소 | 20081231 |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공장 |
| 16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69번길 15-1 (오류동) | 검단출장소-26053 (2023. 8. 9.)호에 외기 말소 | 20081231 |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17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69번길 23 (오류동) | 검단출장소-26000 (2023. 8. 8.)호에 외기 말소 | 20081231 |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서광산업 |
| 18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69번길 21-1 (오류동) | 검단출장소-25979 (2023. 8. 8.)호에 외기 말소 | 20081231 |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공장 |
| 19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69번길 21-4 (오류동) | 검단출장소-25977 (2023. 8. 8.)호에 외기 말소 | 20081231 |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20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276번길 51 (대곡동) | 검단출장소-9386 (2023. 3. 30.)호에 외기 말소 | 20130730 | 대곡로 시작지점부터 약 2,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21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65번길 20-16 (오류동) | 검단출장소-9792 (2023. 3. 31.)호에 외기 말소 | 20081231 |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공장 |
| 22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512 (미천동) | 검단출장소-16259 (2023. 5. 23.)호에 외기 말소 | 20090710 | 검대이 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몇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 OK자동차공업사 |
| 23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55번길 45 (불로동) | 검단출장소-25374 (2023. 8. 3.)호에 외기 말소 | 20211025 |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24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37 (불로동) | 검단출장소-25376 (2023. 8. 3.)호에 외기 말소 | 20090710 | 검대이 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몇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고시 제2023-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 8. 14.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포레나루원시티 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120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 62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3년 8월 8일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 개시일 : 2023년 11월 8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0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고시 제2023-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 8. 14.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루원지웰시티푸르지오 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06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 63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3년 8월 14일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 개시일 : 2023년 11월 14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0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고시 제2023-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 8. 14.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호반써밋프라임뷰 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2로 70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 64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3년 8월 14일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 개시일 : 2023년 11월 14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0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17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일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 중 우리구의 공무원이 아닌 타 기관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안정정책실무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조정(안 제6조)
- 나. 구의 공무원이 아닌 타 기관 공무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 명확화
(안 제13조)
- 다.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자구정정(안 제13조, 안 제14조)

4. 의견제출

-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안전총괄과, 전화 032-560-2885, 팩스 032-560-2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및 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바람)

* 우편 발송 의견 제출처

[주 소]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일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 중 우리 구의 공무원이 아닌 타 기관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안정정책실무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조정
(안 제6조)
- 나. 구의 공무원이 아닌 타 기관 공무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 명확화
(안 제13조)
- 다.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자구정정(안 제13조, 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도 첨부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2023-17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법 제66조의9”를 “법 제66조의1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공무원”을 “구의 공무원”으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등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 | 개정안 |
|---|--|
| <p>제6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2. (생략)</p> <p>3. <u>법 제66조의9</u>에 따라 구에서 개최(주관)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심의</p> <p>4. (생략)</p> <p>② (생략)</p> <p>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안전총괄과장</u>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④·⑤ (생략)</p> <p>제13조(실비지급) <u>공무원</u>이 아닌 위원회등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u>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u>」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p> | <p>제6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 ----- -----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법 제66조의11</u>----- ----- ----- -----</p> <p>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재난안전업무 담당 국장</u>----- -----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13조(실비지급) <u>구의 공무원</u>----- ----- ----- ----- 「<u>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u>」----- ----- -----</p> |

| | |
|--|---|
| <p>할 수 있다.</p> <p>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등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위원회의</u>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p> | <p>-----.</p> <p>제14조(운영세칙) -----</p> <p>-----</p> <p>----- <u>위원회등</u></p> <p><u>의</u> -----</p> <p>-.</p> |
|--|---|

관계법령 발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삭제 <2013. 8. 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 12. 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의견제출서

| | | |
|----------|-------------|--|
| 1. 자치법규명 | | |
| 2. | 성명(단체명/대표자) | |
| | 주 소 | |
| 3. 의견 | | |
| 4. 기타 | | |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